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031

발의연월일: 2025. 4. 22.

발 의 자:김문수·허성무·조계원

박지원 · 민형배 · 강경숙

백승아 · 김준혁 · 김영호

고민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답사 등 교육활동을 준비함에 있어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은 인솔교사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민사상·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나뉘는 불합리한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하는 면책적용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된 측면이 있음.

이에 학교장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도 민사상·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면책적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조인력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

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법률 제 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56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을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2056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법률 제2056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 리 지침 등) ① ~ ④ (생 략) 리 지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⑤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 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 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라 학생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